##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3496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유영하 · 권영세 · 이인선

김정재 · 서범수 · 김기웅

윤재옥 • 박성훈 • 강선영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

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 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 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는다.
  -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曾孫子女) 또는 고손자녀(高孫子女)일 것. 다만, 고손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해당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사망하였을 것
    - 나. 해당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을 것
  - 2.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 3. 제2호에 따른 국외 이주로 인하여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국적법」 제4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것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 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제4조(국내 정착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으 려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 험정보"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여 정착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을 신청한 독립유공자 후손(이하 "정착지원신청후손"이라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착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하 "정착지원후손"이라한다)과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착지원신청후손 및 정착지원후손과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신청후손 및 정착지원후손과 그 부양

-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정착지 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정착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원신청후손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착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신청후손과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

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초기정착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후손에게 소득 인정액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 기정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초기정착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 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정착지원후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지원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진료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후손이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 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착지원후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 보후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지원기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정착지원의 기간은 5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지원후손 중세대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정착지원후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정착지원후 손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 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초기정착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

착지원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제7조에 따른 초기정착비, 제8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9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금(이하 "초기정착지원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초기정착지원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기정착지원비등을 받은 경우
- 2. 초기정착지원비등을 받은 후 그 초기정착지원비등을 받게 된 사 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초기정착지원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 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 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제14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초기정착 지원비등을 받은 사람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 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초기정착지원비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국적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정착지원 대상 여부 결정
  - 2. 제7조에 따른 초기정착비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위한 조사
  - 3. 제8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위한 조사
  - 4. 제12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 5. 제13조에 따른 초기정착지원비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

- 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 거나 정착지원을 받게 한 사람
  - 2. 제6조제6항(제1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